##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533호

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

# 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, 대수선 등 인허가 시에 수선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된 신축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구조안전확인 부담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방화·방수 성능개선 등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·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내진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급제로 개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기존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·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(안 제58조제2항 등)
  - 1) 기존 건축물 증축, 대수선 중 방화·방수·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
  - 2)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증가가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구조내력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
- 나. 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표기방법 개선(안 제60조의2제2항, 제3항 및 제4항, 별표 13)
  - 1) 건축물 내진능력을 현행 수치값 표기(진도 및 최대지반가속도)에서 내진등급(내진특등급, 내진 I 등급, 내진 II 등급)으로 산정하여 표기 하도록 개편하고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 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
  - 2)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 시 적용한 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고, 기존 건축물이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내진등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기준 전부를 개정

- 다.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제2항제1호 등)
  - 1)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,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일련번호 현행화 및 문장부호 표기 오류 정정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lit.go.kr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・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이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및 전화번호
-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985, 4991 / 팩스 044-201-5576